

제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공약 요구 기자회견문

이주민의 권리를 공약하라!!!

4.10.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각 당과 지역별 후보자들은 앞 다투어 시민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250만 명에 달하는 모두의 동료시민인 이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각 정당이 발표한 이주민 공약은 사실상 이주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이주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시민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주민과 관련한 정당 공약은 평상시의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주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모두의 동료 시민이다. 이주민은 인구소멸, 지역소멸과 같은 기존 한국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며,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주민은 당연히, 이번 총선에서도 이 땅에서 함께 삶을 가꾸는 주체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은 이주민을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해야 하며, 이주민을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이주민인권단체는 제 22대 총선을 맞아, 모두가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각 정당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총선 공약을 통해 어떻게 해야 침해받고 차별받는 이주민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삶을 함께 누리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 정당은 더 이상 동료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공약하라!!!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라!

첨부: 이주민 권리보장 공약 요구 사항

이주인권단체 일동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 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나오미센터, 성요셉노동자의 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와 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살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보호를위한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두천가톨릭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단법인두루,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의창,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와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사목위원회 파주EXODUS, 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미얀마노동복지센터, 민주노동총서본부, (사)이주민과 함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CERD권고이행모니터링단,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대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여성인권포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동포총연합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가. 주요 공약 요구 사항

- 인종차별 철폐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ILO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노동허가제 도입,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임금체불 근절, 산재 근본대책 마련,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
- 이주여성의 체류 안정성 보장, 이주여성 노동자의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 체계 마련
-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중단과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
- 이주아동에게 차별 없는 의료보장, 보육 및 양육 제도 적용, 출생등록제도 마련
- 공공부문에 의한 계절 및 어선원 이주노동자 도입시스템 정비 및 송출 브로커와 업체 배제, 강제노동·인신매매 근절 대책 마련
- 건강보험제도의 이주민 차별 폐지, 상병수당 대상에 이주민 포함, 장애 이주민을 의료·재활 서비스 대상에 포함
- 난민법 개악안 폐기 및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심사제도 정비, 난민신청자의 체류권 및 생존권 보장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복원 및 설립 법제화 등 지원인프라 확대

나. 분야별 요구 사항

이주노동자와 노동권

1

-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
-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 노동허가제 도입
-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 노동권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250만 이주민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특히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모든 취업비자에 있어서 사업장변경이 제한되어 극단적 종속 상태에 있음. 인권, 노동권 보장 시급함.
 - 2023년 10월 19일부터 기존의 사업장변경 제한에 ‘지역제한’ 까지 더해져, 신규 입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일정한 권역 내로만 사업장변경이 제한됨.
- 한 해에 임금체불 액수가 1천2백억을 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사업주들이 손쉽게 임금을 떼먹고 있음. 구제조치도 매우 미흡함. 5인미만 비법인 사업장 대지급금 대상에서 제외 됨. 진정, 소송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음.
- 기숙사 기준 취약해서 임시가건물 등 매우 열악하고 비용 부담 지속되고 있음.
 - 2023.11.27.부터 새롭게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주의 기숙사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임시가건물이 전면 금지되지 않고 있음. 전체 이주노동자 절반 이상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임시가건물에 살고 있고 농업에서 70퍼센트임.
- 근로기준법 63조(휴게, 휴일 조항 적용 제외)로 인해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고 있음.
 - 농어업에 연장근로수당, 주휴일 등이 없고 사업장등록 없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도 가입 불가능하여 높은 비용으로 지역건강보험 가입하고 있음.
- 계절근로제도 하에서 계절노동자들이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신분증 압류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음.

-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강제 단속추방 지속,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문제 심각 확대
 - 미등록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강제추방에 시달리고 있음. 이주노동자 전체적으로 산업 안전 문제 심각하여 내국인에 비해 산재사고 사망 비율이 3배나 높음.

2) 요구

- ILO강제노동금지협약 준수, 노동허가제 도입,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여 강제노동 철폐하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해야 함. 사업주의 재고용 없어도 5년 이상 취업기간 보장하고 가족 동반 허용해야 함.
 - E-2, E-6, E-7, E-8, E-9, E-10 등 모든 취업비자에 사업장변경이 제한되고 있음. 비자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해야 해야 함.(사업주 '이적동의서' 요건 폐지 등)
-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임금체불 근절, 퇴직금 국내 지급 등 임금지급 보장 조치
 - 돌봄 업종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가 일부 정치권, 한국은행 등에서 나오고 있는 바, 인종차별적이고 국제·국내법 위반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절대 반대함.
 -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사업주의 노동시간 기록(출퇴근시간) 의무화, 농어업 비법인 5인미만 사업장에도 간이대지급금제도 적용, 체불임금 구제 법적절차 진행 중에는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부여, 출국만기보험(퇴직금보험)은 출국 후가 아니라 국내에서 지급
-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 기숙사 기준 강화, 사업주의 기숙사 제공 의무화
 -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등 임시가건물은 지자체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전면 금지해야 함. 기숙사 제공을 사업주 의무 사항으로 하고 기숙사 기준을 전반적으로 대폭 강화해야 함. 숙식비를 임금에서 사전공제하는 것을 폐지해야 함.
- 근로기준법 63조 폐지로 농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
 - 농어업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휴일 없는 노동, 연장근로수당 없는 저임금, 계약 위반, 부당한 착취를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휴게, 휴일 조항 적용을 농어업에는 제외시킨 근로기준법 63조를 폐지해야 함.
-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안전과 건강권 보장
 - 현장 업무에 맞게 모국어로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사업자 등록 없는 사업장에도 직장건강보험 가입 적용, 노동부에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부서 설치하여 산재예방 근본대책 마련,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설비 지원

- 돌연사 예방을 위해 돌연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 조사 및 대책 마련

○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추방 중단과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

- 반인권적인 강제 단속추방 정책 중단,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
-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범위에 임금채불 진정 등 노동사건 포함

○ **이주노동자 지원인프라 확대, 통역 지원 대폭 확대**

-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 철회, 이주노동자 규모 확대에 걸맞게 지원 인프라 확대, 고용센터 및 지방노동관서에 통역지원 대폭 확대

○ **계절노동자, 어선원노동자 착취 근절과 권리 보장**

- 지자체와 해외지자체간 MOU 방식의 계절노동자 도입 폐지, 어선원 노동자 민간업체 송출제도 폐지해야 함. 중개업체(브로커)개입 방지, 수수료·보증금·담보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이 도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함.
- 입국 전후 언어, 법제도, 권리 교육 실시, 근로감독 강화

○ **인종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함.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

○ **공공부문 이주여성 노동자(가족센터) 임금차별 해소**

- 이주배경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센터에는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등 결혼이주여성이 일하고 있음.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며, 가족센터 사업 안내에 명시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노동자들은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선주민 노동자와 달리 가족센터 사업 안내에 따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한 채 제 각기 다른 기본급을 지급받고 있으며, 수당체계 역시 마찬가지임.
- 가족센터 내에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이주배경가족 지원에 대한 기여도는 절대적이지만 이들의 노동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차별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전면 적용**

- 고용보험은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당연 가입이 되지 않고 있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 정도만 당연가입이고 그 외 취업(단기취업 C-4, E-1~E-8, 선원 E-10, 재외동포 F-4 등) 임의가입만 가능함. 이로 인해 이주민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매우 낮음. 고용허가제(E-9) 노동자에 대해 당연 가입이 적용되고 있지만 직업능력개발 계정에 한정되어 있어서 고용보험의 핵심인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 따라서 고용보험 차별을 시정하여 모든 이주노동자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부분 포함해서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해야 함.

이주여성

2

- 결혼이주민의 시민으로서의 체류 안정성 보장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체류제도 개선 및 사회보장제도 마련
- 이주여성 노동자의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체류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결혼이민제도

-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F6(결혼이민)비자의 미등록(‘불법체류’) 신규 발생 인원은 756명임. 2022년 1,136명, 2021년 1,204명으로, 결혼이민제도에서 여전히 미등록 체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결혼비자의 체류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줌.
- 결혼이주여성이 대부분인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결혼이민비자 취득 가능 여부 및 귀화(혼인간이귀화) 절차도 배우자 및 자녀 유무, 사별·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짐. 사별·이혼 등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귀화 필기시험을 봐야 하고, 복수국적 취득 기회가 차단됨. 이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생계와 병행하기 어려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자녀 출산과 양육, 배우자 동거 여부 등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연장 및 귀화 절차가 다른 점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가부장적 시각을 정책화한 것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 사망·이혼을 경험하거나 자녀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차별임. 또한 긴 혼인귀화 심사 기간(2022년 2월 기준 약 18개월)은 또 다른 어려움 중 하나임.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체계의 미약함

- 이주여성의 젠더기반 폭력피해 실태가 파악되고 있지 않음. 또한 100만여명의 이주여성 인구 대비 전국 이주여성상담소는 10개소로, 매년 증가하는 이주여성 상담과 지원 규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함. 젠더기반 폭력피해의 경우 가정, 사업장, 학교 등 가해자에게 종속된 체류자격과 체류상황으로 신고와 처벌이 어렵고, 피해구제 이후에도 일상회복이 어려움.
- 이주민 대상의 사법·의료·공공 영역에서 안정된 통번역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주민의 정보접근성과 지원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주여성 노동자의 젠더기반 폭력 문제와 취약한 노동환경

- 국내 이주여성노동자 규모는 고용허가제(E-9 비자) 노동자의 10% 미만인 2만여 명, 방문취업제(H-2 비자) 노동자의 40% 인 6만여 명임.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최대 3회' 까지 허가하고 있음. 그러나 젠더기반 폭력피해 이주여성 노동자의 경우 폭력피해 사실 공개 및 입증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장 변경이 어려움. 2023년 신설된 사업장 이동 지역 제한 규정은 기본권 침해가 예상됨.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려는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산과 여성경력단절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돌봄을 저임금 노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돌봄노동 가치를 평가절함. 또한 이주여성노동자를 그 대상으로 상정함으로써 성·인종차별적임. 이미 국내 이주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실태조사에서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 열악한 노동환경이 조사된 바 있음.
- ‘비닐하우스 기숙사’ 로 상징되는 이주여성노동자 숙소는 인한 성폭력 위협 등 안전성의 문제, 일상적인 ‘쉽’ 의 불가능한 문제, 열악한 위생 등으로 이주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2017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기숙사 기준에 관계없이 월급에서 기숙사비 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열악한 숙소 환경임에도 이주노동자가 높은 기숙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음.
-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은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취업처 중 하나임. 결혼이주여성은 정부 채용의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에서 통상 이중언어 지원, 통번역 업무를 하고 있음. 2020년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주민 대상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의 63%가 계약직, 20.3%가 무기계약직으로, 91%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호봉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75.9%이며,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80.6%이었음. 이주여성노동자 중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노동현장에서 차별을 경험함.
- 외국인력정책에서 여성 노동자를 고려한 임·출산, 젠더기반폭력 등 정책이 전무

2) 요구

○ 결혼이주민의 시민으로서의 체류 안정성 보장

- 한국인 배우자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귀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
-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와 다름없는 과도한 귀화 자격요건 완화

- 귀화 심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체류제도 개선 및 사회보장제도 마련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체류 구제방안 마련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경우 일정기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하여 생계 걱정 없이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입소자에 대해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제도에 포함
- 상담, 사법, 의료,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이주민을 위한 안정된 통번역 지원 마련

○ 이주여성 노동자의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 마련

- 이주여성 노동자 성폭력 피해 상담과 신고만으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보장, 안전한 기숙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 명문화
- 간병·가사, 식당, 모텔 청소 등의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고용조건, 젠더 기반 폭력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
- 이주여성노동자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전담 상담 창구 마련, 젠더기반 폭력 피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법률 조력과 통역, 관련 지원자 동석 가능한 지원 체계 보장
-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취업교육 과정에서 여성인권 관점의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및 정보의 제공
- 고용허가제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에 따른 산전산후 휴가 보장 및 모성권 보호 방안 마련
-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이주민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이주민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이주아동 및 청소년

- 출생등록권 보장
- 건강권 보장
- 보육 및 양육 지원
- 아동·청소년 복지제도에 의한 보호와 지원
- 국내 성장 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 아동의 이주 구금 금지

1)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출생 외국인이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로 이주아동의 기본권 침해
 - 현행 국내의 법제도는 출생신고와 등록이 가능한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는 국민의 자녀로 국한하고 있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동을 출생신고 및 등록이 불가능
 - 부모의 국적국 공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모가 난민이나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 또는 국내에 부모의 국적국 공관이 없는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 빈발
 - 국적국 공관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국내의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국내 체류 여부 및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 2023년 감사원의 조사 결과,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국내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약 6천명이었으며 그 중 약 4천명은 외국인 아동으로 밝혀짐
 -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유기·방임·학대와 같은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아동으로 보호받거나 필요한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 직후 등록될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임
 - 2023년 7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4년부터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사실 통보와 시·읍·면 장의 출생신고 확인 및 직권에 의한 출생등록이 의무화될 예정이나 가족관계등록제도 외 별도의 출생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의료보장제도의 이주아동 배제 또는 차별로 이주아동의 건강권 위협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나, 체류자격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아동은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미성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외국인 미성년자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에 따라 관련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지역가입 세대주인 외국인 미성년자는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이주민을 일부 결혼이민자 및 난민인정자로 국한해, 난민인정자가 아닌 다수의 이주아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음
-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주아동,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험료 체납 중인 이주아동, 의료급여 수급권을 갖지 못하는 이주아동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다수의 이주아동이 국가의 보육 및 양육 지원에서 배제되어 발달권 침해

- 2013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이 그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함에 따라 이주아동은 난민인정자, 아프간특별기여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무상보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일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서 이주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의 보육료 지원에 비해 그 수준이 낮음.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지자체의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 2021년 이후 각 시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등을 개정해 이주아동의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3~5세라는 연령 제한, 유아교육 시설의 부족, 미등록 이주아동 배제 등의 한계가 있음
- 국가의 보육지원 부재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인 가정의 영유아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모나 보호자 없이 가정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음
- 보육시설에서 연령에 맞는 보육과 교육을 받지 못한 이주아동들은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 이로 인한 이주아동의 발달 지연은 이후 학교와 사회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음

○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미비로 생존권 위협

-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유기, 방임, 학대 등의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

원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아동·청소년을 제외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주아동·청소년이 복지시설로부터 보호(입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률의 한계로 보호 중 또는 보호 종료 후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 2019년 보건복지부가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외국 국적 보호 아동의 생계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했으나, 오히려 비용 부담으로 지자체가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청소년의 복지시설 입소 의뢰를 꺼리는 결과를 가져옴
- 한편 시설보호 중인 이주아동·청소년의 의료, 교육, 주거와 관련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자체의 지원조차 전무한 상황임. 예를 들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내국인 아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지만, 이주아동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거나 체류자격이 없어 아예 건강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고 있음
- 연령 또는 기간 제한으로 보호시설에서 자립(퇴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주아동·청소년은 내국인 아동·청소년과 달리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에서 배제되며, 체류자격의 유지나 연장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음

○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주아동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의 미비

- 국내 체류 이주아동 중 부모에게 수반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미성년자인 동안만 해당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음. 고교 재학 중에도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수반 체류자격 연장이 불가능함. 고교 졸업 후 성년이 되기 전까지 독립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나 대학에 진학해서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 취업 및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함
- 법무부는 2022년 2월부터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통해 국내에 6년 또는 7년 이상 체류했고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조건을 충족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신청을 통해 재학생은 일반연수(D-4), 고교 졸업자는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음. 그러나 현 방안에는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대안 교육기관 재학생 및 졸업자 또는 중·고교 중퇴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취업과 체류기간 연장, 사회보험 가입이 제한적인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음
-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성인이 된 이주아동들이 활동범위에 제한이 없고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경제활동을 제약당하는 것은 물론 미

등록 체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이주 구금으로 인한 아동의 인권 침해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내에서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은 단속, 구금, 강제 퇴거의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로 칭해지는 사실상의 “구금”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6년 일반논평을 통해 단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을 구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구금을 하게 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11년과 2014년에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에게는 구금 대신 대안적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음
- 그러나 출입국 당국의 아동 구금은 계속되고 있으며, 2023년에도 몸이 아픈 3세 아동을 아버지와 함께 외국인보호소에 19일간 구금한 사건, 미등록인 어머니를 구금하면서 체류자격이 있는 6세 아동을 23일간 구금한 사건 등이 보도된 바 있음

2) 요구

○ 이주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 등록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 및 등록을 허용하거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신설
- 미등록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단속·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출생등록 담당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 출생등록이 아동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출생등록된 모든 외국인 아동에 대해 외국인등록을 허용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 이주아동에게 차별 없는 의료보장제도 적용

- 모든 이주아동이 부모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
- 외국인 미성년자도 내국인 미성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

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

- 이주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률 개정

○ 국가의 보육·양육 지원 제도를 이주아동에게 확대

- 이미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아동들이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무상보육의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물론 가정양육 수당도 지원
-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주아동들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

○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청소년에게 보호와 지원 제공

-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청소년이 복지시설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
- 보호 중 및 보호 종료 이주아동·청소년이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보호 중 및 보호 종료 이주아동·청소년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

○ 국내 성장 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 국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교육받은 이주아동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또는 성년이 되었을 때 진학과 취업이 모두 허용되며 안정적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
- 현재 시행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 2025년 3월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상시화하고, 구제 대상에 대안 교육기관 재학생 및 졸업생, 중고교 중퇴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응시 기회 부여 등 요건 완화
- 국내 성장 이주아동에게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소득 등 영주자격 신청 요건 완화

○ 이주아동의 구금 금지

- 출입국관리법에 아동 구금(보호)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가 미등록 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부모나 보호자를 구금하는 대신 감독을 동반해 아동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관련 규정 마련

이주 어선원

4

- 어선원 이주노동자 공공부문에 의한 도입과 관리
- 어선원노동협약 비준
-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법규 마련
- 강제노동·인신매매 대응, 근로감독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영리기업인 송출입업체에 맡겨진 도입과 사후관리로 인한 고액의 송출비용과 중간착취
 - 해양수산부는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 고용 업무를 수협중앙회에 위탁, 수협중앙회는 이를 다시 현지 송출업체와 국내 송입업체(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고액의 송출수수료와 중간착취 만연
 - 2023년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전 지불하는 평균 송출수수료가 베트남 1,760만원, 인도네시아 1,200만원에 달하며, 입국 후에도 월 관리비를 비롯해 선박 이전 등을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례가 빈번함
-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 규정의 어선원에 대한 적용 제외로 인한 합법적인 장시간 고강도 노동
 - 「선원법」 제6장 근로시간, 제7장 유급휴가 등의 어선원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농축산어업 노동자 적용 제외로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이 없는 상태임
 - 2023년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의 경우 18시간, 원양어선의 경우 60% 이상이 하루 14시간 이상, 26%가 휴식 없이 연속 18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은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원양어선은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의 조사 결과)
- 노사합의에 맡겨진 최저임금과 재해보상액 결정으로 인한 임금과 재해보상 차별
 - 해양수산부 장관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매년 선원의 최저임금과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임금을 정하고 있음
 - 해당 고시는 ‘적용의 특례’를 두어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결정을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고, 해당 단체협약은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한국인 선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 왔음

- 2018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수협중앙회 간의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합의서>는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도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으로 하도록 하여 어선원의 최저임금과 재해보상에서 국적에 따른 극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채무와 계약을 이용한 속박, 신분증과 통장 압수, 이탈보증금 등 강제노동·인신매매의 수단 동원**

-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송출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해 채무를 지고, 이탈보증금을 지불 하는 외에도 입국 전에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손해배상 계약을 체결하고, 입국과 동시에 신분증과 통장을 압수당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인신매매의 상태에 있음
- 2021년 「선원법」 개정으로 신분증의 대리보관 금지 조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금지 주체가 선박소유자에 한정되어, 송출입업체 등에 의한 신분증 압수와 급여통장 압수 관행에 대응하지 못함

○ **해양수산부 근로감독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

- 2021년 기준 선원근로감독관 총 54명 중 겸임자를 제외하고 실제 근로감독 업무 담당자는 26명에 불과한데 3년을 주기로 순환보직함으로써 절대적인 인력 부족과 더불어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요구**

○ **공공부문에 의한 어선원 이주노동자 도입시스템 정비와 송출입업체의 배제**

- 어선원 이주노동자 도입을 양 정부의 공공기관이 직접 담당하며, 입국 후 고용 및 사후관리 또한 해양수산부가 직접 담당하고 송출입업체를 배제함으로써 송출비리와 중간 착취를 근절할 것

○ **ILO 「2007 어선원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비준 및 이에 준한 국내 법령 정비**

- 「2007 어선원노동협약」은 모든 상업적 어선을 적용대상으로 어선원의 모집과 고용 알선, 근로계약, 승선인원과 휴식시간, 임금지급, 생활환경, 의료, 산업안전, 사회보장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가입국이 적용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동 협약을 비준하고 그에 준하여 국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제적 규범에 맞는 어선원의 권리를 보장할 것

○ **어선원의 최소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법 규정 마련**

-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거나 어선원의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일정한 휴게시간과 휴일을 보장하는 법 규정을 「2007 어선원노동협약」에 준하여 신설함으로써 어선원의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호할 것

-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동등한 적용으로 최저임금과 재해보상 차별 폐지
 -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결정을 노사 간 단체협상에 위임한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적용의 특례’를 폐지하여 최저임금과 재해보상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폐지할 것
-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인신매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의 마련
 - 송출 수수료, 이탈보증금, 불법적인 손해배상 계약, 신분증과 통장 압수 등 명백한 강제노동·인신매매 지표를 인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양수산부 근로감독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 선원근로감독관 인력을 확충하고 근로감독 업무에 전업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통번역 지원체계를 확보할 것

이주민 건강권

5

- 건강보험제도의 이주민 차별 폐지
- 의료급여 수급 대상 이주민 범위 확대
- 상병수당 지원 대상에 이주민 포함
- 장애 이주민을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대상에 포함
-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이주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제도적 차별 심화

-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음
- 그러나 관련 법령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에 따라 이주민 가입자들은 내국인 가입자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음. 특히 이주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일부 체류자격을 제외하고 입국 후 6개월의 최소 체류기간 요건, 전년도 평균보험료 이상의 보험료 부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으로 세대원 범위 축소,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 보험료 체납 즉시 보험급여 중단, 보험료 체납 시 체류기간 연장 거부 불이익 등 차별이 심각함
- 2024년 1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24년 4월부터는 이주민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일도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는 입국 후 6개월로 늦춰짐에 따라 국내 체류 6개월간 건강보험 공백기를 갖는 이주민이 증가할 예정임
- 건강보험제도 내 이주민 차별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주민들에게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 부담과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중단 및 체류 연장 불허와 같은 고통을 초래하고 있음. 동일한 제도 내에서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자를 차별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과 균등한 급여 제공이라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 훼손되고 있음

○ 협소한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이주민의 범위

-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난민법 등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이주민은 한국 국적자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부양 중인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1세 등으로 국한됨

- 이에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이주민 취약계층은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 아무런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이주민 배제

- 정부는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이에 따라 시범사업 선정 지역에 거주하는 15~64세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상병급여를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지원 대상의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하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거나 난민 인정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이주민이 제외되고 있음
- 따라서 상병수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이주민이 제외될 우려가 있음

○ 장애 이주민의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제약

-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체류 이주민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의 비율은 5.0%로 내국인의 5.2%와 비슷하게 나타남. 그러나 2023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을 한 이주민은 0.4%로 내국인 5.1%에 비해 크게 낮았음
- 이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이주민을 제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와 난민인정자로 국한하고 있고, 이주민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규정 때문임
- 장애가 있는 이주민들은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해서, 장애인등록을 하더라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복지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음. 특히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지원 및 건강보험료 경감에서 배제됨에 따라 장애 이주민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

○ 미등록 이주민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 미등록 이주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주민에 비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관광 목적의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국제수가(외국인수가)를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에게까지 적용해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중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이주민, 2006년부터는 그러한 이주민의 18세 미만 자녀까지를 대상으로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업은 예산과 지정 의료기관 수의 부족으로 인해 매년 극소수의 미등록 이주민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2) 요구

○ 건강보험제도의 이주민 차별 폐지

- 국내 체류 이주민의 건강보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에게 요구되는 입국 후 6개월이라는 자격 취득 시기를 체류관리제도와 연동해 개선해야 함. 현재 장기체류 이주민의 외국인등록 요건이 3개월 초과 체류임을 고려해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하거나 국내 입국 후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입국 직후 또는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주민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차별을 없애야 함. 이주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책정해 부과해야 하며, 장애인, 노인, 아동(미성년자) 등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 요건을 이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이주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범위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외 부모, 손자녀 등 동거 가족을 포함해 이주민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함
- 보험료 체납 시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202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린 만큼, 조속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체납 제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의료급여 수급 대상 이주민 범위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개정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이주민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 모든 체류자격 소지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거주(F-2), 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정주형 체류자격 소지자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만이라도 의료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함

○ 상병수당 지원 대상에 이주민 포함

- 상병수당 제도가 본격 실시될 때,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적 제한을 폐지해야 함

○ 장애 이주민에게 장애인복지제도에 따른 의료보장 혜택 제공 및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장애가 있는 이주민의 장애인등록을 폭 넓게 허용하고 등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서비스, 특히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함
- 특히 저소득층 장애 이주민과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감면, 의료급여 수급권 허용도 병행되어야 함

○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내 의료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아닌 경우, 이주민에게 국제수가(외국인수가) 적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
-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고 타 의료기관에서 사업 수행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이주민 환자들에게도 의료비 지원 제공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과 별도로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건의료 취약계층 이주민, 특히 아동, 장애인, 산모·신생아의 긴급·필수의료 접근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신설

\

난민

6

- 난민법 개악안 폐기 및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심사제도 정비
- 인도적체류자의 권리 강화와 가족결합권의 보장
- 출국대기소 설치 및 출입국항 난민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 난민신청자의 체류권 및 생존권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난민인정률과 심사제도

- 한국 난민심사제도의 문제는 협약상 난민임에도 난민으로 확인받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임. 지나치게 낮은 난민인정률은 이를 보여주는 표지임. 2023년 난민인정률은 1.49%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0-2%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난민신청과정에서 통번역 지원 및 조력이 전무하고, 난민면접조서, 난민불인정사유서 등 기본적인 서류가 여전히 한국어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난민법상 난민심사관은 전국적으로 4명에 불과하고, 사실상 심사인력으로 활용하는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나 관리감독은 입법의 공백임

○ 난민법 개악의 추진

- 정부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나, 핵심은 '난민인정심사 부적격제도'로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조사를 생략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충실한 난민심사기회의 보장의 측면에서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음
- 유엔난민기구, 난민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원 등에서 이에 대해 우려의 의견을 표하였음에도 정부는 지속해서 난민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음

○ 인도적체류자의 불안정한 지위와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 인도적체류는 난민지위에 대해 보충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로 2023. 12. 31. 기준 한국에 누적 인도적체류자는 총 2,609명으로 시리아, 예멘 등의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도적체류자에 대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

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삶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난민법에서는 취업활동허가를 할 수 있음(난민법 제39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난민인정자에 대해 인정되는 기초생활보장 등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회적 권리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음

- 특히 가족결합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랜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지 못해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출입국향 난민신청제도의 문제점

- 출입국향 난민인정신청절차의 도입취지가 비호신청자의 폭넓은 난민인정신청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의 난민인정심사로 회부되는 비율이 약 절반가량에 불과함
-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불회부결정을 남용함으로써 인해 정식의 심사기회조차 얻지 못한 난민신청자는 이의신청 등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소송을 통해 불회부결정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하여 장기간 출입국향에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난민신청자 열악한 처우의 문제

-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심사의 적체로 인해 임시적인 체류지위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 한국사회에 체류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음
- 난민신청자가 기본적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 처우지원 제도는 규정만 있을 뿐 실제 난민신청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열악한 처우에 그대로 내몰리거나, 극소수에 불과한 교회, 민간단체 등의 자선에 의존하여 생존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더하여 법무부는 지침으로 난민재신청자 등 특정 사례군에 대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난민심사가 지속되는 동안 출국만을 유예하고 있음.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 기본적인 생존수단마저 박탈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등에서 개선 의견을 표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는 바 없음

○ 무기한 구금과 외국인보호소(시설) 인권침해

- 구금기간의 상한이 없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2025. 5. 30. 입법개선시한으로 정하였음
- 그간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으로 인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이 장기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었고, 열악한 처우와 징벌적 특

- 방 구금과 ‘새우껍기’ 고문과 같은 반인권적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음
-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아직까지 개선입법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장기구금과 열악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음

2) 요구

○ 난민법 개악안 폐기 및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심사제도 정비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난민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난민신청절차에서의 통번역 및 조력권 보장, 난민심사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강화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심사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인도적체류자의 권리 강화와 가족결합권의 보장

-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기초생활보장, 제한 없는 노동의 권리 등 정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하루 빨리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가족결합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출국대기소 설치 및 출입국항 난민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임시거주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 공간은 비구금시설로 운영되어야 함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가 변호사 조력 없이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함

○ 난민신청자의 체류권 및 생존권 보장

- 난민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안정적 체류가 보장되어야 하고, 처우와 관련하여 난민예산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난민신청 후 6개월 전에는 취업이 불가능한 제도를 수정하여 생계를 위한 자구책이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을 의무화해야 함
- 또한 심사기간 동안 주거지원, 의료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처우 정책이 전면 개선되어야 함

○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비구금 원칙 준수 및 외국인보호소(시설) 처우개선

- 외국인보호소(시설)이 출국을 앞둔 외국인이 임시로 출국을 대기하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신청자,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구금의 원칙을 명시하여야 함

- 구금기한 상한 명시 등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맞게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 필요함
- 외국인보호소 내 외부교통 및 통신권, 건강권 보장 등 기본적 처우의 개선이 시급함